

# 시민환경권익보호를 위한 환경분쟁조정제도 운영

## ■ 환경분쟁조정제도 개요

- 소음·진동·먼지 등 환경피해로 인한 분쟁을 신속·공정하게 해결함으로써 시민의 건강·재산상 피해를 구제하는 행정상 준사법적 제도
- 운영근거
  - 환경분쟁조정법 제4조(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)
  -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
- 설치·운영 : 1991년 5월
- 위원회 구성 : 위원장(행정1부시장) 포함 15명으로 구성

총 원	공무원	변호사	교 수					전문가
			법률	대기화학	소음진동	보건정책	자연과학	
15명	2	7	1	1	1	1	1	1

※ 공무원 : 행정1부시장, 기후변화정책관

- 임 기 : 2년(연임가능) --- 2012. 5. 3. ~ 2014. 5. 2.
- 주요기능 --- 행정상 합의제, 준사법적 구제절차
  - 환경오염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조사 및 배상액 산정
  - 분쟁해소를 위한 조정제도 운영
- 환경분쟁조정(調整)의 종류
  - 알선(斡旋) : 합의하기 쉬운 여건 조성으로 합의 유도
  - 조정(調停) : 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 양 당사자에게 수락권고
  - 재정(裁定) : 피해사실을 조사하여 배상금액을 결정한 후 당사자에 통보

환경분쟁조정 신청사건 법정처리기한

- 알선 3개월, 조정·재정은 9개월이나 우리시는 이보다 1~2개월 단축운영 중
  - 알선 : 3개월 ⇒ 2개월, 조정 및 재정 : 9개월 ⇒ 7개월

**■ 조정실적(2007년 ~ 2012년)**

분쟁조정 실적

- 신청건수

구 분	합 계	2007년	2008년	2009년	2010년	2011년	2012년
건	408	61	92	51	65	60	79

※ 회의개최 현황 : 총88회('07년 15회, '08년 17회, '09년 19회, '10년 10회, '11년 10회, '12년 17회)

- 신청유형 : 알선 110건, 조정 9건, 재정289건
- 피해유형 : 공사장소음 279건, 층간소음 84건, 대기 10건, 생활소음 35건
- 처리현황 : 총408건
  - 합의 275건, 위원회 결정 46건, 기타(이송,중단) 54건, 진행중 33건

※ 피해배상액의 81%가 5백만원 미만의 소액배상임

※ 2012년 운영실적 : 총79건 ⇒ 온라인 시스템 운영개시 ('12년 1월)

- 신청접수 : 인터넷 49, 방문 30

- 공사장 44, 층간 16, 악취 2, 기타(실외기 등) 17

※ 분쟁관련 민원상담 : 1,473건

**■ 향후계획('13년)**

- 분쟁조정 처리기간 단축으로 신속·공정한 처리
- 피해배상금액의 현실화로 시민의 환경권익향상
- 직장인·사회적 약자 등을 위한 온라인시스템의 적극적 활용